



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?

외화증권취득, 외화대부채권취득,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한 자금지급 그리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이 있습니다. 투자 방법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외화증권취득

- 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- ②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- ③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
- *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

▶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

- ①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
- ② 동 법인과 원자재·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
- ③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·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
-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10% 미만이라도 가능

▶ 외화대부채권취득

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(또는 수립하는)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방법

▶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한 자금지급

- ①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

- ②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자금

- 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(단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)

▶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의 해외직접투자

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개인 기업을 외국에서 경영하는 경우



해외직접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있나요?



현행 제도상 투자자는 모든 외국환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 등 은행의 대다수 지점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음)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동 외화대출의 용자한도, 용자형식, 용자기간 등은 금융통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<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>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특히,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외자금 총액의 70%이하(중소기업의 경우 80%이하)를 지원하고 있으며,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0%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용자시 해외투자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하고 주무장관의 추천서 또는 허가서를 취득한 국내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,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.

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졌습니다.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@paran.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